

변경 대비표

1. 해당 투자신탁명 :

- 우리G PIMCO글로벌투자등급증권투자신탁(채권_재간접형)(H)
- 우리G PIMCO글로벌투자등급증권투자신탁(채권_재간접형)(UH)
- 우리G PIMCO분산투자증권투자신탁(채권_재간접형)(H)
-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투자신탁(채권_재간접형)(H)
- 우리G PIMCO글로벌투자등급증권투자신탁(USD)(채권_재간접형)
- 우리G PIMCO분산투자증권투자신탁(USD)(채권_재간접형)
-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투자신탁(USD)(채권_재간접형)

2. 효력발생일 : 2020.01.17

3. 변경 사유 :

- 1)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
- 2) 투자신탁의 운용팀 변경
- 3)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

<투자설명서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<부책임용전문인력> 이다원	<부책임용전문인력> 이영노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주 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<u>해외펀드운용팀</u> 이 담당하며, “책임운용인력” 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, “부책임용인력” 이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. (운용현황은 <u>해외펀드운용팀</u> 이 담당하고 있는 현황입니다)	주 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운용팀 이 담당하며, “책임운용인력” 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, “부책임용인력” 이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. (운용현황은 멀티에셋운용팀 이 담당하고 있는 현황입니다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-	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.
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</p> <p>나. 환매</p> <p>(5)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</p>	<p>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u>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,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.</u></p>	<p>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과세</p> <p>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원천징수 원칙</p>	<p>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(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 변경, <u>실물양도의</u>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.</p>	<p>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 변경, 전자증권법 제 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.</p>